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올바른 이해와 실천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UN CRPD의 이해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본질적인 질문 - Why?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왜 필요한가?

❑ 세계 인구의 15% 장애인 : 세계장애보고서(2011)

10억명 이상의 장애인구 중 2억명은 상당한 정도의 기능상 어려움 경험
- 전체 장애인 중 약 2% 정도만 가장 초보적인 건강, 교육 서비스 접근 가능

➢ 주택 소유, 기타 재산, 권리의 행사 영역: 빈곤, 빈민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 ..

- ❖ 세계 80%의 장애인이 실업 *The Poorest of the poor*
- ❖ 50%에 해당하는 장애는 예방 가능하며, 빈곤과 밀접한 관계
- ❖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아시아-남태평양 지역에 장애로 인해 간접으로 고생하는 인구가 전체 가구의 25%로 추정
- ❖ 장애 여성은 장애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복합장애의 피해자
- ❖ WHO의 세계질병부담연구(2000-2004)는 세계장애출현율을 19.4%로 제시함.
- ❖ 세계건강조사에서는 여성의 장애출현율이 남성에 비해 6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는 인권문제

■ 장애인들은 불평등을 경험한다.
예) 장애로 인하여 보건의료, 고용, 교육, 정치참여에
장애인들이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할 때

■ 장애인들은 존엄성에 손상을 입기 쉽다.
예) 장애로 인하여 폭력과 학대, 편견, 무례에 시달릴 때

■ 일부 장애인들은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예) 장애인들에 대한 불임 시술 강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 수용, 또는 법적 무능력자로 간주될 때 등등

UN 의 선언문 등을 통해 본 **장애 인권의 역사**

■ **UN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 **지적장애인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1971)**
- 의료, 교육, 훈련, 재활, 경제적 안정, 가정 및 지역생활을 할 권리 규정

■ **장애인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975)**
- "이 헌장에 규정된 모든 권리는 .. 어떠한 예외, 구별, 차별 없이...장애인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 **정신장애인 보호 및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원칙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1991)**
- 지역생활, 보호, 치료, 임신중절 금지 등

■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일반 규칙 Standard Rules on the Equalis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3)**
-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 등

CRPD는 인권의 역사

-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ople, 198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sation of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993)
- 1990년대 40개국 이상에서「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 **일련의 국제적인 문건들이 장애가 인권문제임을 강조**

인권의 기본 문서

- 1) 세계 인권 선언 (1948)
- 2)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66) – B규약
- 3)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66) - A규약

<u>특별한 보호를 규정하는 인권 조약 문서</u>

-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65)
- 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 (I979)
- 6)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및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I984)
- 7) 아동 권리 협약 (1989)
- 8)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 (1990) – 비준 안함
- 9)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 (2006.12.13. 만장일치 채택/2008.5.3. 국제발효)
- 10) 강제실종 보호협약 (2006.12.20. 만장일치 채택/2010.12.23. 국제발효)
  - 비준 안함

장애인 권리 협약의 배경

- 세계인권선언 (1948), A, B 규약 (1966)
  - 장애인을 인권보호의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고,
    사회보장과 보건 정책의 대상

- 장애인은 더 이상 객체가 아닌 주체

- 장애의 개념: 의료적/개인의 비극적 모델→사회적 모델 →권리 모델
  의료, 복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계와 권리/인권의 문제

- 동화(同化)적 통합(Integration)에서 → 포괄적 통합(Inclusion)으로 전환
  -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차별, 격리, 과잉보호, 배제(exclusion) 등
    인위적 요인을 제거하여 포괄적 통합의 기회를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칙으로 전환

UN의 복지에서 권리에로의 패러다임 변화: 1970년대 시작

- **장애인 대상 세계 행동계획1982-92**.
  세 영역의 장애정책 구조화 – 예방, 재활, 기회 평등

➢**1993년 유엔 총회, 장애인의 기회 평등화**
–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장애차별 금지 국내법
제정토록 촉구

➢ **2006 년 유엔 총회, 유엔장애인권리와 관련된 주제 선정**
- UN 장애인권리 협약, 2008년 5월 3일 국제적 효력 발생

➢ 한국정부 2008년 12월 2일 국회 비준
- UN 장애인권리 협약 2009년 1월 10일 국내 효력 발생

장애인권리협약

CRPD(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12. 13. UN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

- 21세기 최초의 인권조약,

  유엔 역사상 가장 빠르게 마련된 조약

- 멕시코 Vincent Fox 대통령이 2001년 제56차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하여

  그 해 12월 총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한 이래 5년만에 결실

- 2002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8차 회의를 통해 완성 (4년)

. 2007년 3월 30일 첫 서명

. 2008년 5월 3일 국제적 효력 발생

- 20개국 비준 가입하고 30일 후 발효

- 2022. 5. 현재 185개국 비준 (선택의정서 100개국 비준)

※ 북한 : 2016. 11. 23. 비준 / 12. 6. 비준서 기탁 / 2017. 1. 6. 발효

장애인권리협약(CRPD)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추진 경과

○ 보건복지부장관 협약 서명(2007.3.30.)

○ 정부안 국회 제출(2008.6.18.)

- 생명보험 가입 관련 상법 충돌 협약 1개 조항 유보

(협약 제25조마호) → 유보 철회 2021. 12.

- 선택의정서 비준 제외 → 가입동의안 2021.12.29. 현재 국회 계류중

(진정제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등)

○ 국회 본회의 통과(2008.12.2.)

○ 외교통상부, 비준서 UN 사무국 기탁(2008.12.12.)

- UN 사무국 기탁 30일 후 발효

○ 협약 국내 발효(2009.1.10.)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9월 17일, 장애인권리협약이 유보조항이 없이 비준되어야 하고, 선택의정서의 가입도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장애인권리협약(CRPD)

■ 북한과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2013.7.3.)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비준(2016.11.23.)

○ 비준서 UN 사무국 기탁(2016.12.6.)

- UN 사무국 기탁 30일 후 발효

○ 협약 발효 - 2017. 1. 5.

○ 2018. 1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최초 이행보고서 제출(총76쪽)

○ 이행보고서의 주요 내용

- 장애인구(2016년 기준)는 전체인구의 5.5%(남 5.1%, 여 5.9%), 지체장애 2.5%, 청각장애 1.3%, 시각장애 1.2%, 언어장애 0.4%, 정신장애 0.4%, 지적장애 0.3%

- 우선추진과제로서 장애여성의 권리증진,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등

→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국제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함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왼쪽 2번째)이 지난 2017년 5월 평양에서 리흥식 외무성 인권담당대사(오른쪽 2번째) 등 북한 당국자들과 회담했다.

(출처: https://www.voakorea.com/a/4757574.html)



▲ 조선장애자연맹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함께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설명하는 김형식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오른쪽 첫번째) - **2018**년 **9**월



▲ 우리민족 서로돕기 상임대표 이일영 교수와 평양 어린이 재활병원 송 원장

- 출처: 에이블뉴스 2020-03-04 기사

장애인권리협약(CRPD)

한국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조항

- 제6조 여성장애인,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20조 개인의 이동

구성 - 전문, 본문 50개 조항, 선택의정서 18개 조항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 협약 감독기구
- 한국위원으로 김형식위원(2011.-2018.), 김미연위원(2019-)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 가입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1966) - 가입

③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 가입

④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조약(1979) - 가입

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 가입

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 가입

⑦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 미가입

⑧ 장애인 권리협약(2006. 12. 13.) - 가입

⑨ 강제실종 보호 협약(2006. 12. 20.) - 미가입

CRPD는 인권의 역사

- UN 장애인권리협약은
  - 20세기 제정한 국제인권조약들이 장애인 인권 보호와 신장에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와 문제의식에서 탄생

  ⇒ 현재까지 인권조약상의 인간 존엄의 보편성을 확인함과 함께 장애인 인권의 특수성을 반영

- 장애인권리협약은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며, 비준한 협약당사국들은
  본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 의무를 가짐.
  - 즉각적 실현(의무) + 점진적 실현(의무)

CRPD는 인권의 역사

- UN장애인권리협약은
  -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을 담고 있는 가장 최신의 규범

  ⇒ 장애인의 시민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들을 개괄적으로 규정

- 이 규정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증진하고 보호하고 보장하며, 장애인의 타고난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하는데 있음.

CRPD는 인권의 역사

- UN장애인권리협약은
  - 인권을 장애에 적용하여,
    일반적인 인권의 내용을 장애인과 관련하여 구체화하고
    현존하는 장애 관련 국제법들을 명료하게 하는 역할

⇒ 어떤 국가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UN장애인권리협약은 그 국가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다른 인권협약을 통하여 해석하는데 도움을 줌.

⇒ **적극적 해석운동이 중요하고 필요함**
– CRPD 전문 (d)항은 상호연계성을 인정함.

UN 의 장애인권리협약 총 50조

장애인권리협약의 목표

- 전 영역에 걸친 권리의 인정.
- 복지/시혜에서 인권 패러다임으로 이동
- 권리 기반의 발전 보장 촉구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

- 비장애인과 동일한 범위의 인권 향유 재확인
-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을 보장. 장벽철폐를 위한 '편의제공'결여와 '적극적 조치'의 결여도 차별임을 인정함.
- 기본적 욕구충족을 인정하여 본질적인 사회-경제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곧 권리실현
- 장애의 종류 정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국적 상 지위의 차이 제거
- 모니터링(감시와 검토)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 보장

- **선택의정서 총 18조**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성

1. 총론 (제1조 – 제8조)
- 목적(1조), 정의(2조)
- 일반 원칙(3조), 일반 의무(4조), 평등 및 비차별(5조)
- 여성장애인(6조), 장애아동(7조), 인식증진(8조)

2. 실체적 조항 (제9조–제32조)
- 접근성(9조) – 국제협력(32조)

3.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 (제33조–제40조)
- 국내적 이행 및 감독(33조) – 당사국회의(40조)

4. 절차적 조항 (제41조–제50조)
- 협약의 발효(20개국 비준 후 유엔 기탁일부터 30일 경과)
- 서명, 비준, 유보, 개정 등

권리 협약의 구조 (1)

전문 Preamble

1.목적 **Purpose**
2. 개념 Definitions
3.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4. 일반의무 General obligations
5. 평등과 비차별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6. 여성장애인 Women with disabilities
7. 장애아동 Children with disabilities
8. 인식 개선 Awareness-raising
9. 접근성 Accessibility
10. **생명권** Right to life
11.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12. 법앞의 평등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13. 사법 접근권 Access to justice
14. 신체 자유 및 안전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15.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6.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17. 개인의 존엄성 보호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person
18. 이주 및 국적의 자유
Liberty of movement and nationality
19.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권리 협약의 구조 (2)

20. **이동권** Personal mobility

21. **표현의 자유, 정보권**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22. **사생활 존중** Respect for privacy

23. **가정생활존중** Respect for home and the family

24. **교육권** Education

25. **건강권** Health

26. **재활**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27. 근로 및 고**용**

Work and employment

28.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29. **정치적, 공적 생활 참여권**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30.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 및 체육활동 참여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31. 통계와 자료수집

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

32. **국제 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33. 국내이행 및 감독 Nat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34 to 40. International monitoring mechanism

41 to 50. Final clauses

Optional protocol (18조)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총 18조

-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제도

-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 절차, 효과
- 의정서의 발효(10개국 비준 후 유엔 기탁일부터 30일 경과)
- 유보, 개정 절차 등

→→→ 2022. 5. 현재, 선택의정서 100개국 가입 비준

※ 우리나라의 상황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시 선택의정서 유보 (2008. 12.)

→ 2021.3.31. 김예지의원 이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73명 의원 공동서명)

→ 2021.6.29.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12.14.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안' 국무회의 통과

→ 2021.12.28.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국회 제출

→ 2021.12.29.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현재 계류중

장애인권리협약 전문(前文, Preamble)

- 개별조항에 앞서 본 협약의 제정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을 선언적인 형식의 문구로 정리한 것
- 본 협약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담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실현이 개별조항으로 표현된 것임
  → 전문은 개별조항들을 떠받치고 있는 밑받침
- 전문의 내용은 개별조항의 해석 및 적용의 근거가 되는 밀접한 관계

- 협약 전문의 구성 : 총 25개 각호로 구성, (a)호~(y)호
  - 특히 (e)호는 장애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개념으로 보고, 개인의 손상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장애 특성을 언급함

→ 제1조에서 제시된 장애인의 정의를 보완해주는 내용임.

※ 제1조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CRPD의 일반원칙 : 핵심 8대 원칙 (제3조)

1.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2. 차별금지
3.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
4. 인간의 다양성·속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5. 기회의 평등
6. 접근성
7. 남녀평등
8.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 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

CRPD 비준 국가의 일반적 의무 (제4조)

-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입법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한다.
-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관행을 억제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하는 업무수행을 보장한다.
- 모든 개인, 단체 또는 사기업에 의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평등 및 비차별 (제5조)

-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
- 장애를 이유로 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해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 평등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해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장애인권리협약(CRPD)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CRPD 이행과 인권 실천

- 국가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때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 단체들과 협의하여야 함.
- 협약은 공적/사적 기관들에게 장애인들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할 것을 요구함.
- 선택의정서는 진정절차와 조사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절차는 CRPD를 모니터링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직접 참여하에 인권의 틀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장애의 개혁을 진전시킴.

⇒ 핵심 메시지는 장애인은 관리되는 '객체' 가 아니라,
  동등하게 인권을 존중받고 향유하는 것이 마땅한 '주체'라는 것임.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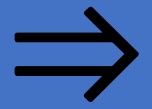
- 모든 장애 영역과 모든 정책(입법) 영역을 망라하는 법적 도구

- 법적 구속력: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적 문서
  권리보장을 위한 의무와 주체, 권리와 의무간의
  관계를 명확히 개념화 함

- *국제 인권 도구이며, 개발협력 촉진 도구*

장애인의 신분적 변화

- 보호(protection)받는 신분
- 편견-차별의 대상
- 수동적, 의존적, 시민
- 소외(exclusion)
- 무력한 시민
- 박애, 자선 시혜의 대상



- 적극적 사회성원
- 평등과 비차별
- 능동적 시민적 권리
- 포함 (inclusion)
- 역량 있는 시민
- 시민으로서의 권리의 인정

Needs Paradigm → Rights Paradigm
시민으로서의 장애인 신분 변화

- 보호(protection)받는 신분 ⇒ 적극적 사회 성원으로
- 편견-차별의 대상 ⇒ 평등과 비차별의 추구
- 수동적, 의존적, 부정적 시민 ⇒ 능동적, 독립적 사회성원
- 배제(exclusion) ⇒ 포함(Inclusion)
- 무력함 (Powerlessness) ⇒ 역량 강화(Empowerment)
- 박애, 자선 시혜의 대상 ⇒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

Needs 와 Rights 간의 긴장은 쉽게 해결 될 문제는 아님
단, 배제되지 않고 권리와 기회가 보장된다면 존엄성을
인정받는 시민적 자격을 향유할 수 있음

인권의 개념

-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음.
- 본질적으로 문화적 배경, 가치관, 연령, 성별, 능력, 환경 등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
- 일정기간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고 일생 동안 보장 받는 것.
-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정부나 국회, 법원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 존중(Respect), 보호(Protect) 및 실현(Fulfil)의 의무

인권에 대한 기본적 접근

- 1)**인권감수성**
  - 장애인의 실태,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고 접근하는 노력
- 2)**인권적 판단력**
  - 장애인에 대한 어떤 행동이 인권의 관점에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는 노력
- 3)**인권 의식의 동기화**
  -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장애인 인권의 가치를 우선시하려는 노력
- 4)**인권옹호행동의 실천의지**
  - 장애인의 인권옹호 행동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실행과정

인권의 개념과 헌법/ 국제법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사회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연대성에 입각한 복지국가원리 수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제1항), 교육권(제31조), 근로의 권리(제 32조), 노동3권(제 33조), 건강권(제36조 제3항), 가족생활 및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행복추구권(제10조), 남녀평등권 등

- UN 인권헌장 제22조 :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또는 각 국가의 기구와 자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 권리를 실현 하는 권리를 갖는다.”

- 대한민국 헌법과 UN 인권헌장 제22조: 사회복지의 구체적 이념이 법 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줌.

장애인 인권의 법적 보장

1. 헌법
2. 장애인권리협약
3. 장애인 차별금지법
4. 장애인복지법 등

- 장애인의 인권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국제법 및 국내법 등이 모두 보장해야 할 법적 과제

헌법상의 장애인 인권

○ 보편적 인권보장은 헌법의 이념

○ 장애인에게 중요한 보편적 인권 목록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행복추구권
- 생명권 존중, 평등권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일할 권리의 보장, 생존권 보장 등

○ 헌법 제34조 5항
- '장애인에 대한 국가보호' 를 특별규정함
- 장애인의 사회보장권, 즉 복지(서비스)권의 근거규정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법과 국내법 적용

장애인권리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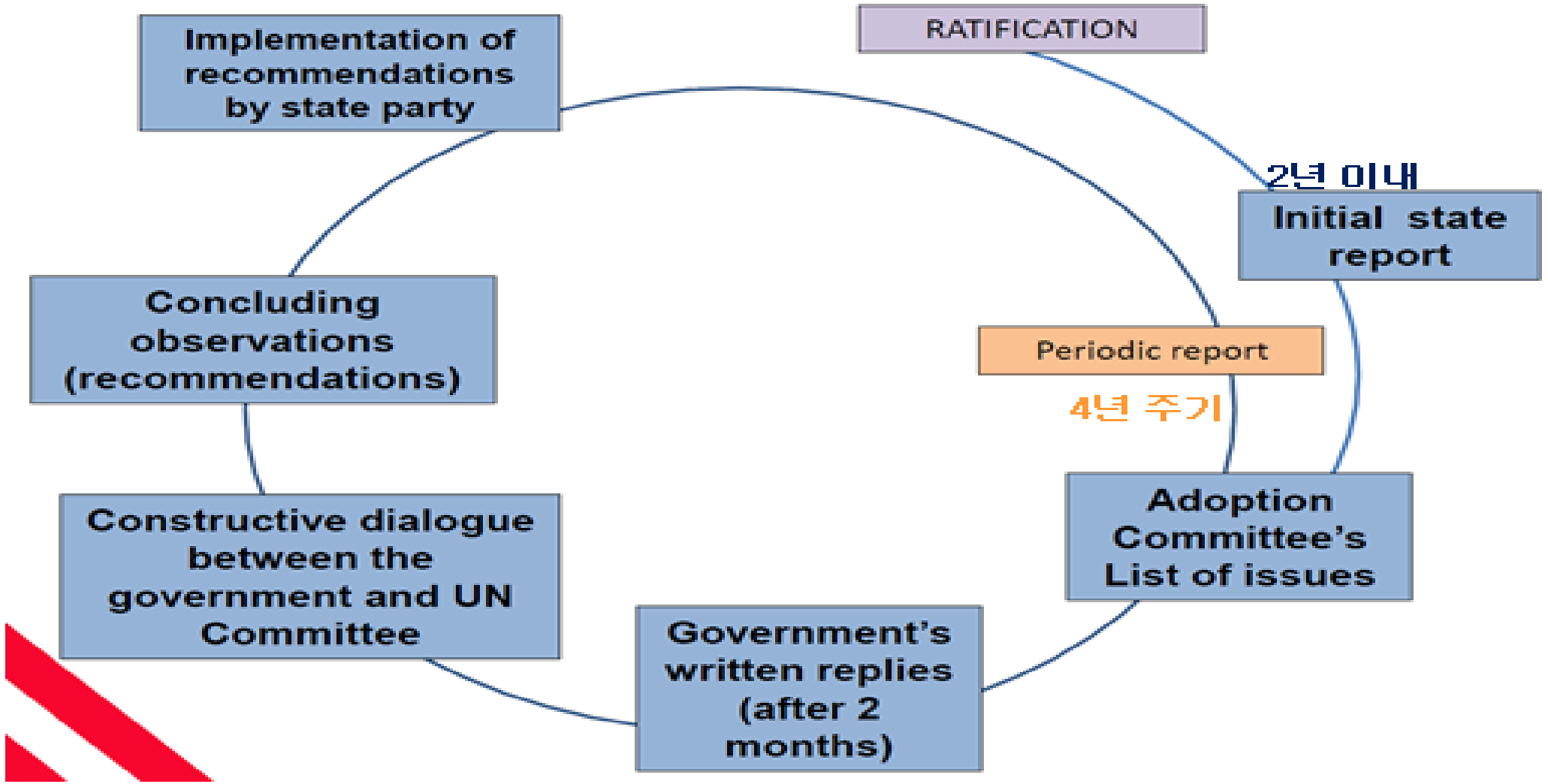
-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기회의 균등
- 차별금지, 남성과 여성의 평등
- 평등과 차별금지, 법 앞의 평등
-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
-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 교육권 및 건강권, 생명권 보장
- 근로의 권리, 자립생활, 사회보호
- 사법접근권, 공적 참여 보장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
- 고용 및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보장
- 모/부성권 보장, 성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차별금지
-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 차별금지

CRPD 이행 보고과정


RATIFICATION
2년 이내
Initial state report
Periodic report
4년 주기
Adoption Committee's List of issues
Government's written replies (after 2 months)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the government and UN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recommendations)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by state party

CRPD의 이행 및 실천

-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monitoring) : 제33조
  - 정부 내 전담부서(focal points) 지정
  - 정부 내 장애인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조정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있는 상설조정기구 설립 권고
    →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필요
  -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 대표 단체들이 참여해야 함

- 일반 법령 및 장애 관련 법령을 협약 기준에 맞게 개선
  - 법령 및 조례를 포함하여 협약의 원칙과 기준을 포함(명시)할 것
  - 법령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CRPD의 이행 및 실천

- 인식제고 및 교육
  - 공공행정 및 공무원, 법조계에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협약 및 인권 포함
  -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아동 포함 모든 교육과정에 인식제고 교육 수행
    → 인식제고 및 교육의 기획, 수행과정에 장애인 참여 보장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게 인권 및 이용가능한 자원, 지원서비스, 이의제기 및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할 것

- 정보수집
  - 장애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 장애관련 데이터의 축적 및 분석
  -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모니터링에 장애인구분석, 관련 목표 및 지표를 포함할 것

SDG와 CRPD의 연계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지구촌 협력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와 CRPD의 연계: 장애를 언급하고 있는 5가지 SDGs 목표



SDG와 CRPD의 연계: 장애를 언급하고 있는 5가지 SDGs 목표

목표4.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4.5 –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 소수민족,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인구에게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7a – 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축하고 개선하며, 모두에게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SDG와 CRPD의 연계: 장애를 언급하고 있는 5가지 SDGs 목표

목표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8.5 – 2030년까지 모든 여성, 남성, 장애인 및 청년을 포함,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달성한다.

SDG와 CRPD의 연계: 장애를 언급하고 있는 5가지 SDGs 목표

목표10. (불평등 감소)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10.2 –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참여를 증진하고 확대한다.

SDG와 CRPD의 연계: 장애를 언급하고 있는 5가지 SDGs 목표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한다.

11.2 –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접근가능하고,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도로 안전을 개선하며,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필요에 초점을 맞춰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11.7 – 2030년까지 모두에게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접근 가능한 친환경적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특히 여성,아동, 노인 및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춘다.

SDG와 CRPD의 연계: 장애를 언급하고 있는 5가지 SDGs 목표

목표17. (지구촌협력)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17.8 – 2030년까지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춰 모든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양질의, 시기적절한, 세분화된(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및 국가상황과 관련된 속성 등에 따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크게 확대한다.

현장적용: 장애인 중심 서비스

- 장애인 권리 중심 서비스 : '그 원리와 방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장애인을 *수동적* 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아님

-첫 단계부터 장애인 중심 서비스 계획으로 시작된다.

- 서비스기관의 기본전략:
- ①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철학과 사명이 기관의 가치로 표방.
- ②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자연적 권위를 인정하는 적극적 참여,
- ③ 장애인 중심 서비스 전달을 위한 조직 문화 개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
  (현존의 서비스 전달체계와 장애인 중심 서비스 철학이 상충되는 요소를 규명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④ 장애인 중심 서비스는 사명감의 지속적인 점검과 기관장의 성찰이 요구
- ⑤ 장애인 중심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식과 전문성 (예, 서비스 전달에 사용되는 용어, 어투, 직원의 선발 등)을 위한 직원 및 이해당사자의 훈련을 위한 투자가 요구 됨.
- ⑥ 장애중심 서비스 실천이 장기적인 실무형태로 자리 잡게 함.
  상호존중, 장애인과 가족의 권위 인정, 이해 당사자와 업무상의 파트너십 관계 강화

현장적용: 권리기반 장애인 서비스

- '인권'기반의 장애인 기관은 완전통합(inclusion)을 위한 기회 창출과 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not for*) 장애인과 함께하는(*but with*) 서비스 전달 지향
- 첫째, 기관을 찾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둘째,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하는가?
- 셋째, '서비스 plan의 개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며 이 plan은 공유되는가?
- 넷째, 서비스는 기관의 일방적 제공이 아니라,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인가?
- 다섯째, 기관 직원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여섯째,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들의 일상생활 환경과 패턴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가?
- 일곱째, 기관 직원들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 여덟째, 기관의 직원/ 전문가들은 그들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 아홉째, 당사자의/부모의 자연적 권위는 인정하는가?
- 열번째. 기관의 자원과 예산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인권문화의 확산 –Culture of Human Rights

◆ 강력한 인권문화 를 구축하여 인권이 소수의 법률/ 인권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편적 차원에서 국민의 소유물(Owership)이라는 인식의 확산 필요

◆ 법적,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는 일반국민의 관심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확산되도록…

◆ 효과적인 인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 -개인적인 동기부여, 개인의 비전과 헌신 + 공동체의 총체적인 지원

◆ 인권은 가장 강력한 인간의 이상이자 인간공동체의 비전.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정열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비전과 확신

◆ 인권은 인류를 통합시키고, 평화와 정의, 상호에 대한 존경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게 할 수 있다는 확신

‘한국사회/지구촌의 인간화’를 위해 이 보다 더 강한 이상이 있겠는가?

마치며 : 한국 사회에의 적용 과제

- 국내 장애 관련 법(정책)이 협약에 상충되는 것은 없는가?
  - 국내 관련법 등 검토
  - 장애 관련법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조항 추가 등
    (예시) 제00조 이 법의 적용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여야 한다.

- 한국적 상황 : 국제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해온 관점에서 장애인권 현실은 낙후

- *민주주의+경제발전 = 현재 한국 + 인간 존엄성 존중, 차별금지*
  = 미래 한국 ⇒ 장애인 인권 보장 선진국

